

3. “매입대상자산 매입일”이라 함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매입대상자산에 대한 매입을 요청한 날을 말한다.
4. “매입사유”라 함은 본건 대부거래약정상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.

제 2 조 매입대상자산의 양수도

- (1) “갑”은 매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입사유 발생일에 그러한 사실을 “을”에게 통지하며, 이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“을”에게 매입대상자산을 양도하고, “을”은 매입대금 전액을 별도의 공제 없이 “갑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“갑”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
- (2) 매입대상자산에 대하여 “갑”이 갖는 모든 권리는 매입대상자산 매입일에 매입대금이 지급된 이후 지체없이 “을”에게 이전된다. 매입대상자산에 대한 본건 대부거래약정상의 대주로서 “갑”의 권리, 권한, 이익 및 계약상의 지위도 매입대상자산과 함께 “을”에게 이전된다.



제 3 조 매입대금 및 그 지급방법

- (1) 매입대상자산의 매입대금(이하 “매입대금”)은 매입대상자산 매입일 당시 본건 대출채권의 대출금 잔액기준으로 양사간 협의하여 정한다.
- (2) “갑”이 본건 대부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대출이자(이하 “갑”과 “을”의 매입대상자산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, 이에 따라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“갑”이 수취한 대출이자 중 “을”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(매입대금에서 공제로 갈음 가능함)하기로 한다.
- (3) “을”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입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, 매입대상자산 매입일까지 매입대금을 전액 “갑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- (4) “을”이 매입대상자산 매입일까지 제1항의 매입대금을 “갑”에게 지급하지

아니하는 경우, 매입대상자산 매입일의 익일부터 연 24%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 4 조 매입대상자산 양도의 절차 및 대항요건

- (1) “갑”은 매입대상자산 이전을 위하여 매입대상자산의 매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“을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(2) “갑”이 제(1)항에 따라 “을”에게 매입요청공문을 제출한 경우, “을”은 제3조에 따라 매입대상자산을 매입하여야 한다.
- (3) “갑”은 매입대상자산 매입일까지 매입대상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별지 1 기재 양식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여야 하고, 기타 담보권의 이전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.
- (4) “갑”은 매입대상자산 매입일 현재 보유한 매입대상자산을 현상 그대로 “을”에 양도하기 위하여, “을”이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본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제 5 조 매도예정인의 면책

“갑”은 본건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효력 여부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, 매입대상자산의 양도 이후에 사정이 변경됨으로 인해 발생한 “을” 기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서 면책된다.

제 6 조 제세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

매입대상자산의 매입 또는 상환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으로 하며, 제세공과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7 조 손해배상

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8 조 일부무효 등

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 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,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,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제 9 조 양도가능성

- (1) “갑” 및 “을”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
- (2)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모든 약정, 조건은 본 계약 당사자들 및 그들 각자의 승계인들을 구속하고 그들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.

제 10 조 통지

본 계약과 관련한 발송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본 계약 당사자들의 아래 각 통지처의 주소, 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 번호로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전화 기타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.

1.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28, 10층 (역삼동, 아비스타빌딩)
참 조 :
전 화 : 02-529-7967
팩 스 : 02-529-7961
전자우편 : contact@barunfund.com
2.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
참 조 :
전 화 :
팩 스 :
전자우편 :

제 11 조 계약서의 효력

본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12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

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.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, 배타적 관할법원으로 한다.

(기명날인 또는 서명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에)



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의 권한 있는 대표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하여금 기명·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한 후, 당사자들은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하였다.

“갑”

주식회사 바른클라우드대부

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28, 10층(역삼동, 아비스타빌딩)

사업자번호 “: 634-81-00573

대표자 : 안 재 영



“을”

서울시 강남구 언주로

사업자번호 : 423-88-00841

대표자 : 홍 경 화



별첨.

양도통지서

[내용증명]

수신 : [_____] (채무자의 지위)

제 목 : 대출채권 양도 통지

1. 차주로서 [_____], 대주로서 _____ 등 사이에 20[_____]년 [_____]월 [_____]일자 대출금
합계 금 [_____]원(W[_____])의 대부거래약정(이하 추가, 수정,
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“본건 대부거래약정”)이 체결되었습니다.
2. [_____] (이하 “양도인”)는 20[_____]년 [_____]월 [_____]일 [_____] (이하
“양수인”)와 대출채권매입확약서(이하 “대출채권매입확약서”)를 체결하였습니다.
3. 양도인은 대출채권매입확약서에 따라 본건 대부거래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이
보유한 본건 대부거래약정상 대출채권, 이에 대한 담보권 및 그에 부수하는
권리, 권한, 이익 및 계약상의 지위(이하 “매입대상자산”)를 20[_____]년 [_____]월 [_____]
일자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.
4. 이로써 양도기준일 이후 양수인은 매입대상자산의 적법한 관리자가 됨을
알려드립니다.

20__년 __월 __일

양도인

(인)